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78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김성원・이종배・고동진

김선교・정동만・김정재

박충권 · 임이자 · 박성훈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9조제5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① 외교 |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① | | |
|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 | | |
|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 | | | |
| 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
| <u><신 설></u> | 6. 제9조제5항에 따라 여권을 | | |
| | <u>발급하는 경우</u>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 |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 |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 <u><신 설></u>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18세 | | |
| |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 | | |
| | 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
| | 단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 | |
| | 있으며,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 | |
|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